

제 20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 92 정수물품 승인(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10. 29 - 11. 5 (8일간)					
의 결 일 시	1992. 11. 5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17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 92 정수물품 승인(안) 1 부. 끝						
1992 년 11 월 6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거 수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17 명	반 대	명	기 권	명

정 수 물 품 승 인 내 역

신 규

구 분 품 목 별	부 서 별	부 서 별			취 득 사 유	승 인	
		청수	실수	부족		여	부
냉 장 고 에 어 콘 응 접 세 트 피 아 노	가 정 복 지 과	2	1	1	별 첨 (제안설명)	/	
	" (금오어린이집)	10		10	"	10	
	"	2	1	1	"	/	
	"	3	1	2	"	2	

정수물품승인내역

대 체

구 분 품 목 별	부 서 별	구입년도	내구연한	대 체 사 유	승 인	
					여	부
전 자 복 사 기	사 국 동	87. 3. 2	5	노후 상태불량	/	

제 20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10. 29 - 11. 5 (8일간)				
의 결 일 시	1992. 11. 25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17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수정 의결 첨 부 : 1.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1부 2. 동 조례에 대한 수정(안) 1부. 3. 동 조례에 대한 수정이유및 수정주요골자 1부. 4. 대비표 1부. 1 9 9 2 년 11 월 6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거 수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17 명	반 대	명	기 권 명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구성)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교통행정과장
2. 도시과장
3. 경찰서 경비과장
4. 교육청 학무과장
5.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과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자와 구미시 사회
단체장중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

제6조 (회의개회)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frac{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구성) 제1항중 " 부시장 "을 " 사회산업국장 "으로 한다.

제1호, 제2호, 제4호 "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건설과장 "을 삭제하고 1호에 " 교통행정과장 " 2호에 " 도시과장 " 3호에 " 경찰서 경비과장 " 4호에 " 교육청 학무과장 " 5호에 "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와 구미시 사회단체장중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 " 로 한다.

제6조 (회의 개최)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년월일 : 1992. 11. 2

발의자 : 산업건설 위원회

수 정 이 유

1. 불합리한 문구 수정
2. 보다 현실에 맞게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
3. 회의 개최는 위원의 요구시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수정 주요 골자

1. 개정 조례안 제3조 (구성) 제2항 중 " 부시장 "을 " 사회산업국장 "으로 하고
" 기획 담당관, 총무과장, 건설과장, 운수업체대표 약간명,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를 삭제하고,
"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자와 구미시
사회단체장중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 " 를 삽입
2. 제6조 (회의개회) 제1항 중 "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 를 삽입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기획담당관 2. 총무 과장 3. 교통행정과장 4. 건설 과장 5. 도시 과장 6. 경찰서 경비과장 7. 교육청 학무과장 8.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 생략 제6조(회의개회)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3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교통행정과장 2. 도시과장 3. 경찰서 경비과장 4. 교육청 학무과장 5.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자와 구미시 사회단체장중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 6 ~ 9호 삭제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회의개회)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개최한다.

제 20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10. 29 - 11. 5 (8일간)					
의 결 일 시	1992. 11. 5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17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부. 끝						
1992 년 11 월 6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거 수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17 명	반 대	명	기 권	명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가 설치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보육시설중 정부보조시설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보육시설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원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및 영양, 건강, 안전관리등)
2. 보육계획서 수립 시행
3.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4. 기타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보육시설 종사자) ① 보육시설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 감독한다

②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

제7조 (입원순위) 보육시설의 입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
3. 월평균소득 일정금액 이하 계층의 자녀
4. 부모 취업등으로 보육하기 어려운 자녀
5. 기타 일반주민이 위탁하는 자녀

제8조 (보육료)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도비 또는 시비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보육료는 원장이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한다.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사회부 보육사업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0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10. 29 - 11. 5 (8일간)				
의 결 일 시	1992. 11. 5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17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안) 1부. 1992 년 11 월 6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이 상 유 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17 명	반 대	명	기 권 명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과태료부과기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0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10. 29 - 11. 5 (8일간)				
의 결 일 시	1992. 11. 5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17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부. 끝 1992 년 11 월 6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이 상 유 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17 명	반 대	명	기 권 명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 1 조 (목 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 한다.

제 3 조 (과태료 부과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2조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3조의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외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30일이내에

과태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된 뒤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

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 8 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제 9 조 (과태료수납부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 및 수납
에 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을 제외하고는 구미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일반폐기물처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비 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폐기물 투기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법 제7조)				
가. 1킬로그램 미만	(매회마다) 10	-	-	
나. 1킬로그램 이상 100킬로그램 미만	(매회마다) 30	-	-	
다. 100킬로그램 이상 1톤까지	(매회마다) 50	-	-	
라. 1톤초과 매톤마다	(매회마다) 50	-	-	
2.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2항)				
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경우	300	600	1,000	
나. 다량배출자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10	30	50	
3.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을 위반한자(법 제16조 제2항)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비 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경우	300	600	1,000	
나. 다량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20	50	10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
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과태료부과기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 시설(신고대상)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 한 자(법 제5조)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100㎥미만인 오수정화 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라)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 한 경우	700	800	1,000
(2) 1일 처리용량이 100㎥이상인 오수정화 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200	300	400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400	500	600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600	700	800

초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라)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 한 경우	800	900	1,000
나. 정화조			
(1) 처리용량 10㎥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2) 처리용량 10㎥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300	400	500
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신고대상)			
(1) 방류수 수질기준 2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2) 방류수 수질기준 20%이상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3)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4)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을 초과한 경우	700	800	1,000
2.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			
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200	500	1,000
나. 정화조의 경우	100	200	500
3.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 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 설을 사용한 자(법 제11조 또는 제26조)			

초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경우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200	200	20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0	300	3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500	500	50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0	1,000	1,000
4. 오수정화시설·정화조·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			
가.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나.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0	1,000	1,000

초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5.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 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법제14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			
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 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 200㎥이상 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반기별 1회이상	100	200	500
(2)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 분기별 1회이상	300	500	1,000
(3) 1일 처리용량 5㎥이상인 축산폐수정화 시설(신고대상)은 연 1회이상	100	200	500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이 10㎥미만인 정화조, 축산 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100	300	500
(2) 처리용량이 10㎥이상인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의 경우	300	500	8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500	700	1,000
다.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 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라.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허가 대상)	500	1,000	1,000

초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6. 간이 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1항)	500	700	1,000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 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4항)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500	700	1,000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300	500	800
8. 영업구역·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 한 분뇨관련영업자(법 제35조제4항)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500	700	1,000
나.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 우는 제외)	100	300	500
9.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 영 업자(법 제35조제6항)	300	500	1,000
10.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	300	500	1,00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4.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한다.
5.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법 제24조제4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한다.

[별지 제 1 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 폐 기 물 관 리 법 —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 폐 기 물 관 리 법 —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구미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별지 제2호시식】

제 호 파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법		
제	조	항
성	명	
납부 의무자	주 소	
파태료금액		

위의 파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	--

구미시장

(개인통지용)

제 호 파태료납부서		
위반사항: 법		
제	조	항
성	명	
납부 의무자	주 소	
파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	--

구미시장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영수필통지서		
위반사항: 법		
제	조	항
성	명	
납부 의무자	주 소	
파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	--

(개인통지용)

제 호 영수증		
위반사항: 법		
제	조	항
성	명	
납부 의무자	주 소	
파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 3 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반사항					
⑥과 태 료 금 액			⑦당초납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⑩인					

재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 지 금 액	② 취 소 (변 경) 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별지 제 5 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과태료 처 분 내 역	④부 과 기 간		⑥납부통지서번호	
	⑤고지받은일자		⑦과 태 료 금 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 불 복 사 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⑩

구 미 시 장 ⑪

[별지 제 6 호 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구 미 시 장 ㉑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⑥과 태 료 금 액	
	⑤부과기관		⑦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 7 호서식】

부남수요태과

[illegible]

제 20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10. 29 - 11. 5 (8일간)				
의 결 일 시	1992. 11. 5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17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 1부.

끝

1992 년 11 월 6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이상유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17 명	반 대	명	기 권 명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공무원 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 업무수당지급구분표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갑 지	월 609,000 원 이하	월 518,000 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 업무수당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 연수별	가	나
	개 정	개 정
5 년 이상	월 1,012,000 원 이하	월 673,000 원 이하
4 년 이상	월 1,006,000 원 이하	월 667,000 원 이하
3 년 이상	월 1,000,000 원 이하	월 661,000 원 이하
2 년 이상	월 995,000 원 이하	월 656,000 원 이하
1 년 이상	월 989,000 원 이하	월 650,000 원 이하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제 20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심사보고의 건				
집 회 기 간	1992. 10. 29 - 11. 5 (8일간)				
보 고 일 시	1992. 11. 5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19 명
의 결 사 항 ○ 보고결과 : 원안대로 접수 첨 부 :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심사보고 1부. 끝 1992 년 11 월 6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반 대	명 기 권	

1991 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심사 보고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및 건의사항에 대한 기획실, 총무국소관 처리결과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1년도 정기회의시 권영이의원을 위원장으로한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및 건의한 사항으로서

○ 주민 홍보용 신문 도서구입및 배부건은

당초 1,500부중 절반이 넘는 780부를 중앙지인 서울신문에 편중 구독토록 하였던것을 92.1.1 부터 200부를 줄여서 지방지로 바꾸었으며, 현재는 580부만 서울신문을 구독토록 하고 있으며,

신문구독자의 신분변동 및 주소지 변경등에 따른 부적격자에게 교부되고 있는 신문에대하여 2회에 걸쳐 정비하여 181명을 교체, 실구독자에게 배달되도록 하는등 상당한 노력이 보이고 있으나, 신분변동자에 즉시 교체가 미흡한 실정인바 담당부서에서는 실질적인 구독대상자에게 배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 동장 재량사업비 확일적 배정건은

예산상 배정은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상 동별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 동당 30,000천원씩 확일적 배정은 불가피하였으나 재량사업비가 부족한 선주동, 공단2동, 인동동, 양포동에 110,773천원을 추가배정하므로서 사업수요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있는것은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진일보한 행정이 이루지고 있

었습니다.

○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계장 별정직 공무원 부당임용 방치건은

임용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하나 자격요건을 볼때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 물의를 일으켰던 것은 사실이라 하겠으며, 지난 제5회 임시회의 시 구미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시 공연계장을 별정직범위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며, 총무위원회 운영시 인사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님의 답변시 책임을 통감하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받아지므로,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예술회관 공연계장 직급을 파악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법적인 뒷받침이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새마을사업 주민도급제 건은

새마을 정신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화합단결이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92년도 새마을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92년도에 상모동, 임오동, 인동동에 10건의 주민도급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시민대화합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겠습니다.

○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하자발생건은

올림픽기념관 뿐만 아니라 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과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하여 설계시부터 준공시까지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환기시켜 주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 세무과 지적및 건의사항인 물건세에 대한 체납액 발생건과 결손처분 대상 체납액 건, 세원포착 전담 부서건, 체납세일소 강력 추진건에 대한 지적및 건의 내용은 시정살림에 대한 재원확보에 있는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전 세무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한 세부과로 과세저항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고지 발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단 1건의 체납액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과징자료의 과학적 관리로 탈류세를 방지하고 상설 세무조사반을 편성운영 세원 포착에도 전념을 기울여나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업무처리 자세라 하겠으나 세무업무 보조자 처우개선등을 통하여 사명감을 부여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 중앙시장 임대료 조정건은

92. 2. 19일 구미시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당초조정액인 169,218천원에서 92,444천원을 감액하여 76,774천원을 부과하므로써 영세상인을 보호하였으며, 매년 지가상승율에 의거 임대료를 부과한 것을 조례로서 갑작스러운 인상분에대한 조세저항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조성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 매각가능 시유재산 처리건은

세부적인 관리계획 수립으로 민원을 극소화시킴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중앙시장 현대화 건은

중앙시장 번영회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대화계획이 수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 태세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과같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해결하려는 열성이 깃들어져 있으며 지역균형개발과 시민복지사회 건설에 앞장 설려는 공직자세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만족하지 말고 더한층 연구하고 노력하여 선진시민사회 조기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는 막연하게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자료제공과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1. 노사분규 대응책은 ?

회사의 경영 악화로 노조측 강경 일변도에서 합리적인 교섭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2. 금오산 무허가 통닭집 영업 행위의 건은 '92.10.25 일 현재 영업을 하지않고 있으며,

3. 무허가 위생업소 및 포장마차 근절대책은 시에서 동으로 단속지침을 시달하므로써 동직원의 안면과 일손 부족으로 단속에 애로가있는 문제점이 있으니 시에서 특별 전담단속반을 편성, 주·야간 병행하여 철저한 단속이되도록 집행부에 요구 하였으며,

92개 고발업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서면 제출 요구하여 유인물에 첨부 하였으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유 취급소 내의 식당 영업 행위의 건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5. 옥계가든 및 기린가든 식품 영업 허가 행위 경위의 건은 형질 변경이나 산림 훼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허가 승인이 나와 하는 것으로 알고 부곡동 541-1, 기린가든의 영업허가 경위에 대한 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 하여,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미시에서는 각종 규제가 너무 많아 인접 군에서 구미시로의 편입을 을 꺼리고 있으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각종 조례개정시 규제를 완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 요구 하였습니다.

6.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가 원활히 되어야 사업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파트의 쓰레기 투입구의 분리수거 시설 확충과 쓰레기소각장 시설계획에 대하여 전향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는 점차 시책화 하고, 소각장 시설은 건설비용이 400억 내지 450억원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에 시설비 지원을 건의하여 50 %이상 지원이되면 사업을 추진검토 토록 요구 하였으며,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추후 구체적인 보고를 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7. 산업폐기물 처리의 건은 특정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8. 시내버스 토큰제 실시의 건은 중소도시에서는 제반여건 미비와 시민의 가계 부담 가중으로 실시가 마땅치 않아 어려운 실정이며,
9. 시내버스 승강장 및 버스노선 조정의 건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조정 토록 하였습니다.
10. 불법 주차 단속 건은 대화 및 앰프방송 호루라기 등으로 지도계몽을 하고 있으며,
11.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분 정리 대책은 차량 압류 등록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12.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 건은 연료단지 입구 국유지에 1년간 유상 임대하여 금년말까지 상치장을 이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13. 여름철 방역활동은 분무방역 132 회, 하수구 소독 42 회, 연막소독 120 회 등 294회 실시하므로서 최선을 다하였고, 앞으로도 시민보건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말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14. 무허가 건물 단속 건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이 동으로 되어있어, 동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에서 철거반원과 단속반을 편성 동직원의 일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 추진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15. 대성저수지 이상 기류에 의한 폭우시 대비책은 농업진흥 공사에서 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배수능력 및 여유고는 충분한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계속 관심을 갖도록 요구 하였으며,
16. 국도 33호선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 건은 재감정을 하는등 '91.12월중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17. 보전 녹지상의 시설물 설치의 건은, 원상복구 촉구와 원상복구 재 촉구를 해놓고 이를 추진 조치한 것은 강한자에 대하여 허가조치하는 사례는 법앞에 모든 시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왜곡하는 사례로서,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시정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18.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권 재산의 보상 건은, 93년 공특예산에 반영 보상방법등 기타 내용을 내규화하여 범위와 순서에 의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으며,

19.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 부실에 대한 건은 답변 자료인 조치결과가 불성실 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또한 각종 지적사항을 시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담당직원이 업무연찬을 하여 시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하는 식의 의회를 빙자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 하였습니다.
20. 상수도 용수 단수의 건은 해당, 관련 업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 후 단수조치 하고 있으며,
21. 낙동강 고수부지 수허가자 보상금 지급 건은, 총 보상대상 306필에 대하여 229건은 기보상 되었으며,
77필지에 대해서는 96년말까지 년차적 보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 법성사 재축 건은 91. 4.15 착공 92.12 말경 준공예정 이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질의나 질문에 대한 집행부에서 불성실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강력한 책임 추궁을 하도록 집행부에 거듭 주의를 환기 시켰으며,
각종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진실성있게 제출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 자료제출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20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1992년도 시정질문시 답변추진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의 건				
집 회 기 간	1992. 10. 29 - 11. 5 (8일간)				
보 고 일 시	1992. 11. 5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19 명
의 결 사 항 ○ 보고결과 : 원안대로 접수. 첨 부 : 1992년도 시정질문시 답변추진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1부 끝 1992 년 11 월 6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반 대	명 기 권	

구미시 개발촉진협의회 시정질문 심사보고서

구미시 개발촉진 협의회에 대한 시정질문답변 추진내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2. 4. 30 제15회 임시회의시 이수근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으로 당시 이종주 구미시장님의 답변내용대로 다음과같이 추진되었습니다.

- 92. 5. 31 일자로 구미시개발촉진협의회에서 지방화시대의 여망에 따라 개원된 의회가 모든 기능과 역할을 의결처리하고 있으므로 본 협의회를 더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회장단 및 5개분과 위원장 공동명의로 협의회 해산 취지문을 집행기관으로 송부해오며 따라 자동 해산 되었으며,
 - 92. 8. 25일자로 개발촉진협에서 추천한 의료보험조합의 상임위원인 서태문의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시정 질문시 답변 추진사항 점검의 건

먼저 92. 8. 21 일 제15회 임시회시 김장수 의원님의 산업 폐기물처리에 대한 3, 4 공단이 본격 가동될 것에 대비 관민 공동 출자 방식에 의한 산업폐기물 공동 매립장 설치에 대한 질의는 92. 9월 상부에 지휘보고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입법 예고중에 있으며,

제4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장 조성은 중부지역 관리공단에 매립지 연면적 4~5 만평정도 확보토록 의견서를 제출 하였으며, 관련 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시 중앙시장 현대화에 대한 이용원 의원님 질문 건에 대해서는 중앙 시장 현대화 추진은 도·소매업 진흥법 제7조에 의거 주체는 개설자가 되어야 하며, 현대화 추진 선행 조건은 토지, 건물, 소유권을 개설자가 취득한 후 추진하여야 하므로 국·공유지 매수 승락등 각종 관계 법규가 요구하는 제반 여건을 갖추면 적극 행정 지원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택호 의원님의 시내버스 운송 사업 질문 건에 대하여, 91년도 행정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시 잠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만, 남통동 363 - 53 번지의 국유지 1,872 평을 시내버스 양사에 임대 자기자본으로 임시 회차지로 조성 92년말

까지 원평동 상치장을 이전 하겠다는 조치계획에 국유지 불하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질의 하였으나,

임대기간은 1년간으로 하고, 시설비 등 기타 시설 부대비용은 자부담으로 93년 고시
지역인 선기동 386-2 번지에 상치장 조성시까지 사용토록 추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
으니 추진 결과를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6일 제14회 임시회시 박영환 의원님의 각종 공사시 도로 굴착에
대한 질의의 건에 대하여서는

도로 굴착지 관계 업체인 도시가스외 13개 기관단체 23명에 대하여 7월 28일 복구
관리 지침 시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도로 순찰과 굴착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잦은 굴착을 지양
하겠으며,

굴착부분에 대하여는 복구 예치금으로 시에서 책임 시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
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유념하여 감시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20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2천만원이상 주요사업 추진경과 심사보고의 건				
집 회 기 간	1992. 10. 29 - 11. 5 (8일간)				
보 고 일 시	1992. 11. 5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19 명
의 결 사 항 ○ 보고결과 : 원안대로 접수. 첨 부 : 2천만원이상 주요사업 추진경과 심사보고 1부. 끝					
1992 년 11 월 6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반 대	명 기 권	

2 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경과 심사보고서

기획실, 총무국 소관 2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개 사업으로서 완료된 사업이 14개 사업이며, 미완료된 사업중 11월중으로 완료 계획에 있는 것은 금오산성 복원 추가 공사로 현재 95%의 공사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림픽 기념관 체육교실 마루 설치 공사가 10월 22일 입찰하여 지금쯤 착공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 용역과 인동동사무소 증축 공사는 사업의 시행시기 및 사업의 성격상 93년도 까지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며, 기타 사업은 92년도 12월말까지 완료 예정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시청사 신관 신축공사는 지난 8월 30일 시공회사인 한일산업의 부도로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로 동 회사에서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으나,

9월 5일날 부결이 되었으며, 9월 14일 대구 고등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여 항고중에 있습니다.

판결결과 기각이 되면 한일산업에 공사 포기서를 받고난후, 승계회사인 우성종합건설과 재계약을 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인 바, 동절기 공사를 강행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은 불가피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촉구한바 있으나 앞으로도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보고의 건

2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 건수는 사회산업국·건설국 소관 총 133건이며, 이중 59건은 이미 완료 되었으며,

년내 완공 예정이 61건이며, 대규모 사업이나 추경사업 13건은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진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미화원 전용 시설은 2회 추경으로 부족재원 5천만원을 확보하여, 년도폐쇄기 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사업이 우려되고 있으며, 시민복지 사업등은 금년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 하였습니다.

각종 보상관계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토지 수용 위원회에 재결 신청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나,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게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천생산 공원 개발 용역 및 원평, 송정 공원조성 용역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내 발주가 사실상 어려워 당초 잘못된 것 아니냐 질책을 하였고, 금년 예산을 불용화

하고 내년에도 다시 예산을 계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명시 이월하여 93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를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각동 공회 상업지역의 가로수는 전정작업을 제때 철저하게 실시하여 상가 간판이 보일수 있도록 각별 유념하여 상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하수구 준설 시 작업이 제대로 추진 되었는지 준설 작업시 감독 철저와 작업 완료 후에라도 확인을 철저히 해주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형곡 시영아파트 준공후 입주자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수돗물을 모든 시민의 공감대 속에 안심하고 마음대로 먹을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 하였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민간 단체와 협의하여 전폭적인 지원책을 강구토록 요구 하였으며,

각종 사업 추진시 사업장 주변에 사업 개요를 주민에게 공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주문 하였고,

내년도에도 중요 사업이 실시 되고, 토지 보상 미해결등 어려운 사안이 있겠지만 지방화 시대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과 욕구 분출이 쇄도하고 있으니 지역 실정에 따라 각동마다 가장 시급한 소방도로를 하나씩 만이라도 개설토록 예산을 확보 반영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는 계수와 금액의 단가, 단위 표기는 정확하게 기재하여 혼선이 오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끝으로 많은 사업을 공기내 준공토록 노력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20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92년도 미추진사업 심사보고의 건				
집 회 기 간	1992. 10. 29 - 11. 5 (8일간)				
보 고 일 시	1992. 11. 5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19 명
의 결 사 항 ○ 보고결과 : 원안대로 접수 첨 부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92년도 미추진사업 심사보고서 1부. 끝 1992 년 11 월 6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반 대	명 기 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92년도 미추진사업 심사 보고서

-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된 92년도 사업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92년도 제2회 추경시까지 예산 미확보된 것은 2건으로 인동주유소에서 인동 1교 까지 도로확장 포장 공사로 소요 사업비는 230 백만원으로 인동에서 천평간 확장 포장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수정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며,
 - 순천향 병원 앞 공단 육교 설치 공사는 소요 사업비가 563 백만원으로써, 재원 부족 요인도 있었으며,
육교설치보다 지하도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20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1992년도 정수승인 물품중 미확보 내역 심사보고의 건				
집 회 기 간	1992. 10. 29 - 11. 5 (8일간)				
보 고 일 시	1992. 11. 5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19 명
의 결 사 항 ○ 보고결과 : 원안대로 접수 첨 부 : 1992년도 정수승인 물품중 미확보 내역 심사보고서 1부. 끝 1992 년 11 월 6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반 대	명 기 권	

1992년도 정수승인 물품중 미확보 내역 심사보고서

- 1992년도 정수승인 물품중 미확보 내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 물품에 대하여 승인 신청시는 업무 수행 필요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사무 장비 및 비품의 효율적 관리로 업무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승인 물품중 예산 미 요구한 가정복지과의 비디오 1대, 난방기 1대, 텔레비전 1대와 농촌지도소의 음접세트 1세트와 근로청소년 회관의 중소형 화물차 1대, 부녀복지회관의 싼형 승용차 1대, 하수처리장의 인큐베이터 1대, 색도측정기 1대, 온풍 난방기 1대, 냉장고 1대, 멸균기 1대, 에어컨 디쇼너 1대, 올림픽 기념관의 멸균기 1대, 녹화기 1대분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예산과목 착오로 미구입한 새마을과의 온풍 난방기 1대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미구입한 사회과의 에어컨 디쇼너 1대와 실거래 가격 차이로 미구입한 보건소의 에어컨 디쇼너 1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겠으며,

의회에서 승인해준 물품에 대하여 예산 요구를 하였음에도 예산을 삭감 하였다는 것은 한 시장 밑에서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회계부서와 예산부서간의 업무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정수물품 승인 요구시에는 요구부서와 예산부서, 회계부서가 합의하여 의회에 요구하되 승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여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20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 추진상황에 대한 심사보고의 건				
집 회 기 간	1992. 10. 29 - 11. 5 (8일간)				
보 고 일 시	1992. 11. 5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19 명
의 결 사 항 ○ 보고결과 : 원안대로 접수 첨 부 :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 추진상황에 대한 심사보고서 1부. 끝 1992 년 11 월 6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반 대	명 기 권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 추진 상황에 대한 심사 보고서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 추진 상황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 건은 김광수와 32명의 점유자가 매수 희망하고있는 시유하천 4필지 5,922 평으로서 지난 4월 9일 제14회 임시회의시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었으며,

6월 27일 시유재산 감정결과를 접수하여 7월 28일 1차 입찰결과 전원 유찰되었고, 8월 17일 2차 입찰시에는 예정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응찰에 불응, 집단항의로 파급 8월 20일 시장과 주민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재 감정후 매각키로 합의 하였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재 감정후 평당 300천원 미만으로 매수를 희망하고, 매각 대금을 연부분할 상환을 희망하고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특혜의혹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를 매각하여 영세 점유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20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1992년도 각종행사 실시내역에 대한 심사보고의 건				
집 회 기 간	1992. 10. 29 - 11. 5 (8일간)				
보 고 일 시	1992. 11. 5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19 명
의 결 사 항 ○ 보고결과 : 원안대로 접수 첨 부 :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심사보고 1부. 끝 1 9 9 2 년 11 월 6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반 대	명 기 권	

1992 년도 각종 행사 실시 내역 심사 보고서

1992 년도 각종 행사 실시 내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상 시민의 의식구조 개선 및 시민 대화합을 통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행사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가 행사 그 자체로만 끝나서는 아니 되겠으며, 행사후 사후 관리와 평가회를 가지므로 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필요한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미시민 상을 정착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 년도 각종 행사 실시 내역 심사의 건

사회산업국 및 건설국 소관으로 '92년도 각종 행사는 현충일 추념식 외 5건으로 연동원된 인원은 10,000 여명이고 예산은 15,090 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는 시정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행사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행사가 형식적이고 극히 요식에 따른 행사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 행사 개최에 따른 평가회와 문제점을 도출 반성을 통하여 발전 지향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형식적인 행사로 그쳐 주민 동원에 따른 불편과 예산만 낭비하는 겉치레 행사가 없게끔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하게 지양하고, 필요한 행사는 적극적으로 검소하게 추진 하므로써 행사의 본질이 오도되지않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내실있는 행사가 추진되어 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